

◎ 法律 第3, 934 號

建設技術管理法

1987. 10. 24.

■ 주요골자

- 가.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3조).
- 나.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과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각시·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함(법 제5조).
- 다.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관리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 라.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촉진건설기술의 도입·보급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설립하되, 현재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이 법에 의한 연구원으로 흡수함(법 제7조 내지 제14조, 부칙제2조).
- 마.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공공연구기관

- 및 민간연구기관의 인력·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 바.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된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로 고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 사.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 아.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과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발주공사(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민간발주공사 중에서도 역사성이 있거나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 등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사의 허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 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24조).
- 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중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감리전문회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받도록 함(법 제27조).
- 카. 공공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전담할 감리전문회사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법 제28조).

- 타.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보호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설계·시공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및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서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4조 및 제36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정이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하여 기술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이를 통한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기반과 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 및 시공과 구조물의 유지·관리등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3. “건설기술용역”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구매·조달·시험·시공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사업관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말한다.
 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5.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 등 건설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말한다.

6. “시공감리”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제3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면책임감리”라 함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기술사항에 대한 발주자로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①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기타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4 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 등의 조정)

건설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

사업 및 처분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과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의 확보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 6 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①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관리와 교육훈련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관리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제 1 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 7 조 (설립) ① 건설기술을 전문적·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 8 조 (설립등기) 연구원은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9 조 (업무) 연구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산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조사
2. 선진건설기술의 도입·연구 및 보급
3. 건설기술정보센터의 운영
4. 건설기술에 관한 공법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
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사항

제 10 조 (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단체의 출연금
 3. 연구원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 및 기타의 재원
- ② 정부출연금의 출연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연구원에 대한 지원 및 협조등) ①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의 시설·장비 기타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2 조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전에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사업년도의 개시초에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전년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등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14조 (민법의 준용) 연구원의 설립등이 기타 연구원에 관하여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절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지원등

제 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6조 (공동연구·개발등)

- ① 건설부장관은 연구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 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등을 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선진건설기술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기관과 연구중사자를 상호교류할 수 있다.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 18조 (새로운 건설기술의 보호)

- ① 건설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된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이를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제와 관련되는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건설부장관은 기술개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무단사용을 규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등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 제 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 ① 건설부장관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을 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우대·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건설기술용역

제 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건설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21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그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용역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22조 (건설기술용역업의 합작투자 장려) 정부는 용역업자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술용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업을 합작투자에 의하여 경영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 4 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제 23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假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역사성이 있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시설물등에 관한 건설공사를 허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범위 기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를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건설부장관에게 그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종류 및 시험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품질시험의 대행)

①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시험대행자에게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대행자의 지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적정한 품질시험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시험대행자에 대하여 품질시험 실시의 적정 여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 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품질시험대행자 지정의 취소등)

①건설부장관은 품질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 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판명된 때
2. 제25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품질시험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3 월이상 품질시험대행의 의뢰를 거부한 때
5. 제25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품질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품질시험대행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제27조 (건설공사의 시공감리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감리를 하여야 할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에 종사하는 자(이하“시공감리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및 전면책임감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감리전문회사)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시설·장비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중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업무정지기간중에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한 때.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의 위해를 끼친 때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때
 6. 2년이상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의 실적이 없을 때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
- ②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 ① 건설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33조 (부실 시공감리자에 대한 조치)

건설부장관은 시공감리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시공감리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에 따라 그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건설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절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표준시방서
2. 건설공사설계·시공기준
3.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건설공사감독관의 감독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행하는 공사감독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시공평가등) ① 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건설업자의 기술능력등을 종합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건설업자를 가능한
우대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및 시공능력평가의 기준·
절차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 37조 (자료등의 요청)

① 건설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단체에
대하여 자료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자료는 그 업무외의 목적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 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 15조 및 제 1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 6 장 벌 칙

제 41조 (벌칙) 시공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 2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 제 28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업으로 한 자
4. 제 30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한 자(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감리 또는
전면책임감리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제 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 43조 (과태료) ① 제 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공사절치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 4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 41조 및 제
제 42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처한다.

제 45조 (시공감리자의 공무원 의제)
제 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시공감리자는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손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손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제공)

- ◎ 내무부령 제460호
- ◎ 건설부령 제426호
- ◎ 교통부령 제867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1987. 9. 30.

■ 주요골자

- 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자는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도로·교차로 기타 교통시설과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 도로·교차로 기타 교통시설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후 1년이내 및 5년후에 예상되는 교통영향을 평가하도록 함(영 제2조).
- 나. 교통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사업지역주변의 교통현황, 장래교통수요 예측 및 교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등으로 함(영 제3조 및 별표).
- 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사업지역주변의 교통량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영 제4조).
- 라.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30부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해당 교통시설관리청에 교통영향평가서 1부를 송부하도록 함(영 제5조·제6조).
- 마. 내무부 장관 및 건설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관할관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관할관청은 의견을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7조).

■ 제정이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제정(86. 12. 31, 법률 제3,911호)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의 범위)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자(이하 “평가자”라 한다)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당해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또는 교통영향평가대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로·교차로 기타 교통시설(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영향과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도로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가 교통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설치후 1년이내에 예상되는 교통영향 및 5년후에 예상되는 교통영향을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별표의 평가서의 내용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량등의 조사) 평가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사업지역 또는 시설주변의 교통량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서의 제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평가서 30부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해당교통시설관리청의 의견제출) ① 관할관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평가서 1부를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받은 해당교통시설의 관리청은 그 평가서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내무부장관등의 의견제출등)

① 관할관청은 매 1월말까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제출받은 평가서 각 1부와 그 평가서에 관한 심의결과를 내무부장관,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전년도에 제출받은 평가서중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평가서는 그 다음년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평가서와 그 심의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4월말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의 의견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한 검토의견을 매 6월말까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항목 (제3조관련)

1. 서론
 - 가. 목적
 - 나. 범위
 - 다. 평가방법
2.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자의 위치
 - 나. 사업의 내용
 - 다. 관련계획 및 법령과의 관계
3. 사업지 주변의 교통현황
 - 가. 토지이용 및 교통시설현황
 - 나. 보행 및 주변동선체계현황
 - 다. 도로 및 교차로 교통량현황
 - 라. 대중교통운행현황
 - 마.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발생현황
4. 장래교통수요예측 및 분석
 - 가. 관련계획의 검토
 - 나.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분석
 - 다. 사업시행시 교통수요분석
 - 라. 사업시행전후 교통수요비교분석
5. 교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 나. 도로 및 교차로의 소통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 다. 대중교통 및 보행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 라. 주차시설의 문제와 개선방안

- 마. 교통안전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 바. 기타 문제와 개선방안
- 사. 종합개선계획안
- 6. 결론 및 건의
- 7. 참고자료
- 가. 교통량조사 및 분석자료

- 나. 보행자 안전대책자료
- 다. 대중교통의 운행에 관한 자료
- 라. 기타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의 근거가 되는자료

(내무부, 건설부, 교통부 제공)

'87 제13회 建築士 設計作品 受賞作品 発表

시 상 구 분	작 품 명	수 상 자 명	사 무 소 명
대 상 (건설부장관상)	인하대학 학생회관	조성룡, 장기성	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
최 우수 상 (협회장상)	코오롱 우정관	최관영, 정동명	종합건축사사무소 일건
우 수 상 (협회장상)	독립기념관 남부청소년회관	김 기 응 강 석 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건축사사무소 그룹가건축
장 려 상 (협회장상)	카톨릭중앙의료원 성모병원 3세대를 위한 논현동주택 한국은행 전주지점 방배동 삼호빌라 대전대학 학생회관 포철 광양국민학교	김 종 근 김인철, 한영재 이 영 회 우 남 용 이재성, 유병우, 박상용 이종갑, 심성보	종합건축사사무소 범아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 씨. 엔. 유 건축사사무소 (주)세마 종합건축사사무소

제 2 회 新人·學生設計公募展 受賞作品発表

1. 신 인 부 문

수 상 구 분	작 품 명	수 상 자 명	소 속
금 상	소아재활원	이영신, 고은영, 이명환	우원건축, 테크샤드 교우건축
은 상	HOME PLACE	김동주, 이태호, 김동춘	선진엔지니어링, 삼예건축
동 상	우리동네 한가족	문장호, 이동수, 우창윤	서울대대학원
장 려 상	시각장애자 및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서관	이 선 영	(주)정 립 건 축
장 려 상	장애자 복지시설	김형수, 이건설, 장철순	연세대대학원
장 려 상	지체부자유아 유치원	장훈익, 이상화, 손병규	영남대대학원
가 작	지체부자유자 복지센터	박 근 태	상 우 건 축
가 작	OFFICE CALLERY HOUSE	이건설, 양재혁	연세대대학원
가 작	장애자 복지시설	이승용, 윤대한, 곽영구	연세대대학원
가 작	격리와 융합	이삼수, 유기정	(강원도) (주)종합건축 하나

2. 학생 부문

수 상 구 분	작 품 명	수 상 자 명	소 속
금 상	모 통 이 에	김병금, 오석택	목 원 대 학
은 상	커뮤니케이션	오세왕, 정우정	연 세 대 학 교
동 상	해에서 달까지	심우석, 최동성, 박 일	영 남 대 학 교
장 려 상 (서울지부장상)	여의도 광시곡 (시청사 복합시설)	임용민, 김범규, 박정환	홍 익 대 학 교
장 려 상 (서울지부장상)	상업, 문화 휴식공간	김석범, 서준혁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장 려 상 (부산지부장상)	PAINT TOWN	김관수, 김선미	동의대학교
장 려 상 (인천지부장상)	COMPOSITION TOWN	이용선, 김동완, 홍현기	인 천 대 학
장 려 상 (경기지부장상)	농 가	김기홍, 정태석, 신중수	경기대학교
장 려 상 (충북지부장상)	건축과 환경	정대양, 이정미, 유승철	청 주 대 학 교
장 려 상 (충남지부장상)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계획안	박호길, 라승대, 조재남	목 원 대 학
장 려 상 (경남지부장상)	도심의 쉼터	허대성, 김청영	울 산 공 대
가 작	만남, 희망, 창조	김도경, 이종훈, 민 선	고 려 대 학 교
가 작	골목안에서	황희라, 박광재, 김동한	건 국 대 학 교
가 작	역사의 흔적	정양승, 유진덕, 유태원	한 양 대 학 교
가 작	창 작 공 간	성우철, 윤재선, 안성진	연 세 대 학 교
가 작	개인정원이 있는 도시 연립주거계획	김우영, 왕봉식, 이성형	대유공업전문대학
가 작	안 골	김윤섭, 이상일	부산개방대학
가 작	5.18 기념관	신영석, 김유성	전 남 대 학 교

응 모 작 품 수

건축사설계작품-----43작품 # 신 인 작 품-----24작품 # 학 생 작 품-----63작품

*심사위원명단

■ 건축사 작품

- 위원장 : 안기태(본협회 회장)
- 위 원 : 이광로(대한건축학회 회장)
- 유희준(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배종명(건설부 건축과장)
- 이경희(연세대학교 교수)
- 이정덕(고려대학교 교수)
- 윤도근(홍익대학교 교수)

■ 신인·학생작품

- 위원장 : 이문우(본협회 이사)
- 위 원 : 안장원(본협회 이사)
- 유경철(본협회 서울지부장)
- 이영희(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유원재(종합건축사사무소(주)범건축)
- 김영수(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국)